

의 정 정 보

2006 - 12 12. 5

연말연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

- ◆ 본 자료는 충청남도선관위에서 제공한 사례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재·보궐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대통령 선거입후보예정자·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·지방의회의원·기타 공직선거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 인사 등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사례로 본 사례에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선거법상 제한·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- ※ 행위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는 대통령선거입후보예정자·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·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.

연말연시 관련 선거법위반 사례

1. 연말연시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·음식물 제공 행위

가. 의례적인 행위

할 수 있는 사례

- 기관·단체·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·단체·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연말연시 선물을 당해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
 - ※ 「지방자치법」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·단체·시설의 직원 제외
 - ※ 중앙당이나 시·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
-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각종 사교·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·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
- 지방자치단체가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·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
-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

-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·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
 - 연말·설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·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
 -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
- ※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됨.

- 읍·면·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·예술·체육행사,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(부상을 제외함)을 수여하는 행위

※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.

할 수 없는 사례

- 송년·신년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, 시민위안잔치, 경로잔치,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·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-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·미용협회 등 직능단체,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·음식물,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

- 의정활동보고회,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·물품·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
나. 구호적·자선적 행위

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.

할 수 있는 사례

-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 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 - ※ 경로당, 노인회관,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
- 「재해구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(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) 및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(장애인복지시설)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(유료복지시설 제외)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·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(연말연시 군부대 장병 위문품 제공 행위 등)
 - ※ 다만,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

- 자선·구호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·법인을 통하여 소년·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·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·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 결식자, 이재민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※ 다만, 물품(포장지는 제외)에 직명·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

할 수 없는 사례

- 불우이웃돕기·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연말 연시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·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·대합실 등에서 다과·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

다. 직무상·업무상 행위

할 수 있는 사례

-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)

-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 수여

※ 「지방자치법」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직원 포함.

-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)

-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·자선행위

※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.

-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·효부·모범시민·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·구두미화원·가두신문 판매원·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

-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[정부투자기관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 제2조(적용범위)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]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나 임·직원, 유관기관·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
※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만 제공 가능하며, 법 제86의 제한기간 중에는 제공 불가

-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·수첩·탁상일기·메모판등 홍보물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,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·단체·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

※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제외

할 수 없는 사례

- 지방자치단체장·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국회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·선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입후보예정자가 관내의 기관·단체·시설·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·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- 각급기관·단체·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
라. 정당활동 관련 행위

할 수 있는 사례

-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·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 간부에게 연말연시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
-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·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·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
-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·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- 선거법 제140조(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(당원집회의 제한)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

-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·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·선물·기념품·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
- 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를 대납하여 주는 행위
- 사람을 고용하여 입당원서를 징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
- 정당의 중앙당이 당해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한 기관지를 소속 당원들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

2. 연말연시인사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

할 수 있는 사례

- 연말연시인사·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, 기관·단체·시설이 그 명의(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·성명을 포함)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
-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(문자메시지 포함), E-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연말연시인사를 하는 행위

※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-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

할 수 없는 사례

- 송년·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·성명이 게재된 현수막·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·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
- 송년·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며 업적·경력홍보, 지지호소, 선거공약 발언 등을 하거나 금품·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
- 입후보예정자 1인이 하거나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만으로 신문에 신년축하광고를 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행위
- 정당의 정책·정치적 현안 홍보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게시하는 외에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